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0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4.)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4.23.)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 확보,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용이 등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정부 의견을 일부 반영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제대군인 관련한 사무는 국가보훈부 소관이며, 개정안의 ‘병역의무 이행 후’라 함은 전역 이후로 볼 수 있어 병무청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제 수행 주체(지방병무청장)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